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81

발의연월일: 2021. 8. 27.

발 의 자: 강훈식 · 김정호 · 유정주

박상혁 • 이소영 • 장철민

이동주・송갑석・이성만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로 활용되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 변경으로 인해 20~2 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3천만원 한도 비과세 특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며,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창업 초기단계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않아 기업 초기 단계 인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①
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	
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	
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	
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	
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3천만원</u>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생략)

<u>5천만원</u>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
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해당 기업이 벤
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행사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는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보
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